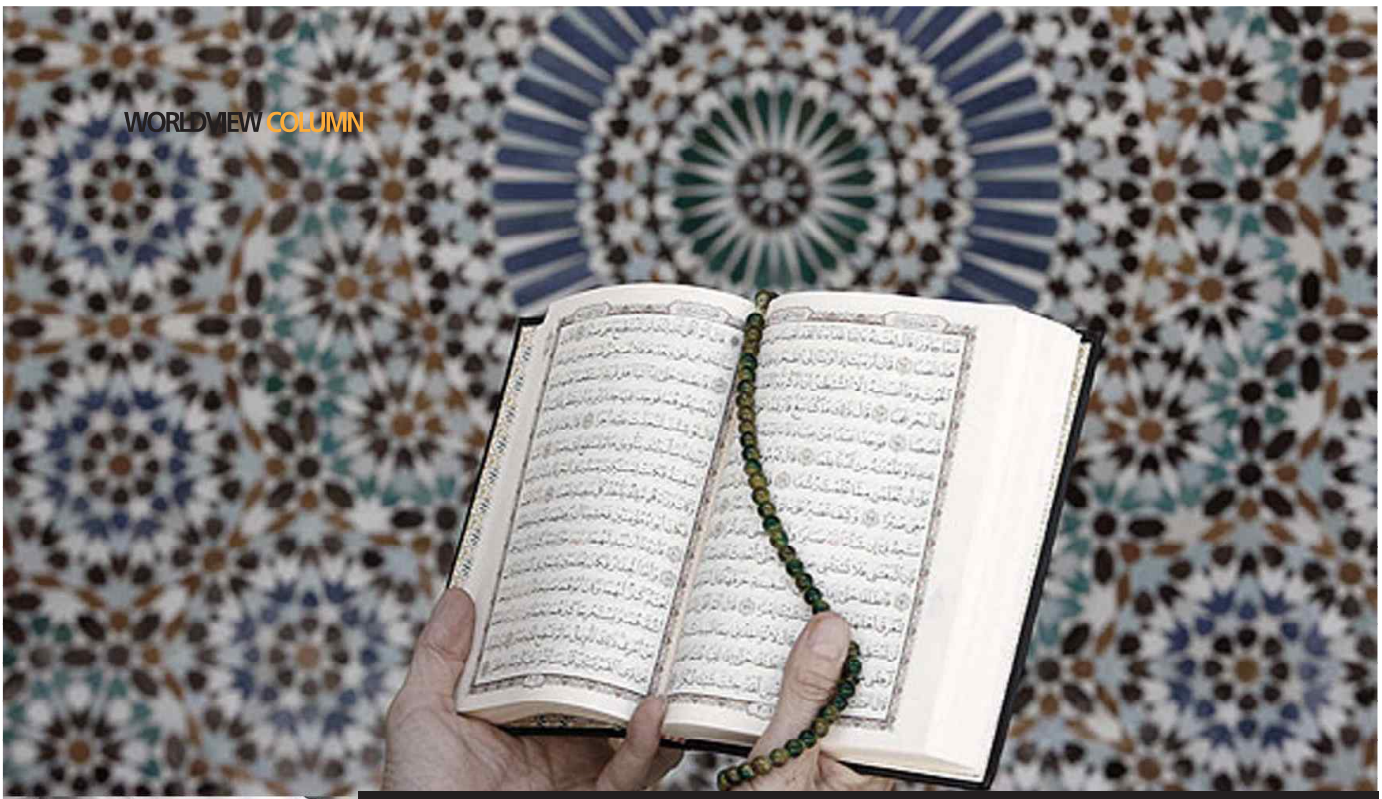

수쿠크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

글 **박종운**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CLF(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

최근 수쿠크법에 대해 기독교계 일부 원로들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증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독교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기독교계의 반대에 부담을 느낀 정부 · 여당이 수쿠크 관련 법안 상정을 보류함에 따라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선거 이후에는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호에서는 김승욱 교수께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수쿠크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필자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수쿠크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수쿠크에 대한 이해

통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이자(아랍어로 '리바')받는 것을 불공정하고 착취적이며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만일 무슬림 투자자들이 샤리아법을 준수하려 한다면 돈을 빌려주고도 수익(이자)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원래적인 의미의 금전채권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 때문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샤리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게 되었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돈으로 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을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독특한 구조의 이슬람적인 금융기법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채권을 '수쿠크(Sukuk 이슬람채권)'라 하는데, "샤리아 원칙에 따라 기업이나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 을 총칭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샤리아'의 가르침에 근거한 금융을 다른 금융과 구별하여 '이슬람 금융'이라 하는데, 이슬람 금융의 역사는 30년 안팎으로 그다지 길지 않다. 따라서 이슬람 세계의 채권발행방식에는 돈을 빌려준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일반 채권방식(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 수쿠크 방식이 있다.

수쿠크 방식도 매우 다양한데, 유형자산을 구입하여 빌려주는 이자라(Ijarah), 고객대신 상품을 구입하여 전매하는 무라바하(Murabahah), 고객 대신 제조를 발주하여 완성된 상품(건축물)을 고객에게 전매하는 이스티나(Istisna), 투자신탁(펀드)에 상당하는 무드하라바(Mudharabah), 공동출자에 상당하는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이자라 수쿠크와 무라바하 수쿠크인데, 그 대략적인 구조는 하단의 그림과 같다(국회 전문위원 자료에서 발췌, SPV : 해외특수목적법인).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듯이 무슬림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이슬람 세계의 모든 무슬림들이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이고 실제로는 옛 소설 속의 유대인 못지않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마찬가지로 은행도 이자(투자수익)를 받는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에 살고 있는 이상 샤리아법을 지키면서 돈을 벌고 싶은 무슬림들이 많을 것이고, 따라서 샤리아법을 지키면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보다 많은 무슬림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될 것다.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에 따르면, 이러한 이슬람 금융은 2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매년 10~15%씩 급성장하고 있다.

수쿠크법(안)의 내용

문제는 2009. 9. 28.경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제1조). 예컨대, 같은 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 제2호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소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면세혜택을 주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가 보다 쉽게 되기도 하지만 외화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세금을 붙이게 되면, 외국자본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세금으로 낼 금액만큼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결국 그 세금은 이자 및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국내법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이자에 세금을 붙일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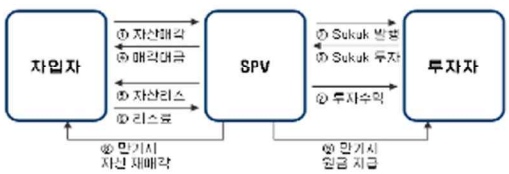

이자라 수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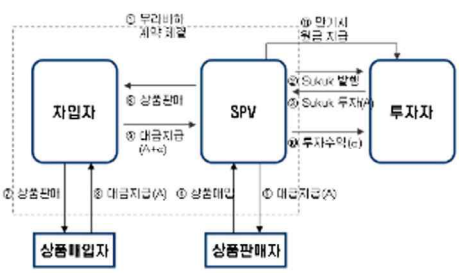

무라바하 수쿠크

정부의 개정안 제안 이유는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발행한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ㆍ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과세특례를 신설하면 내국법인의 이슬람채권 발행 활성화로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1조의2(특정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제119조 및 제120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제21조의2는 "①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이하 '발행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권리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표시증권(이하 '특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하 '조달법인')이 제4호 가목에 따라 발행법인에 지급하는 임대료를 이자로 보고, 이를 지급받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발행법인이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자산 임대용역과 제1호에 따른 조달법인의 자산의 매도 및 제2호에 따른 발행법인의 자산의 재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권리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 제4호에 따라 발행법인에 지급하는 전매대금 중 발행법인의 매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추가지급금')을 이자로 보고, 이를 지급받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제1호에 따른 발행법인의 자산의 매도 및 제3호에 따른 조달법인의 자산의 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법안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현 정부의 입장은, 이슬람금융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형식적으로 보면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와 동일ㆍ유사하게 조세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무슬림 투자자들이 이자라 수쿠크, 무라바하 수쿠크 방식으로 얻는 투자수익은 이슬람금융의 특성에 의한 것이므로 이자수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수쿠크법(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소견(所見)

이러한 수쿠크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슬람권에 풍부한 자금이 있고 자금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술, 담배 등을 금지하는 등 이슬람 금융은 매우 건전하다",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화조달 통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실물투자를 수반하는 특성상 장기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이슬람 금융은 매우 안정적이다", "중동지역의 건설 수주 등에 수쿠크 방식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등 매우 현실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경제적인 측면만 살펴본 것일 뿐, 수쿠크법의 도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리만큼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 때문에 이슬람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아직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수쿠크 제도를 운용할 만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수쿠크법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논평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의 한국 진출이 어려우니 세금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수쿠크가 아니더라도 무슬림 투자자(이슬람권 금융회사 등)들은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기업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무려 약 3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회' 의 통제를 받는 이슬람 금융에 의해서도 이미 자금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니 세금 때문에 한국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수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설사 세금이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한국에 진출하게 되어 있다. 다만 세금을 감면해 주면 이슬람계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쿠크 방식에 의한 외자도입의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샤리아 위원회'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고, 자금조달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자금조달비용이 더 증가할 수는 있다.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는 합리적인 견해가 있는 반면에 오해 혹은 과도한 우려에 가까운 견해도 있다. 수쿠크법을 도입하면 무슬림에 의한 각종 테러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견해는 수쿠크법의 도입과 테러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오도한 것으로 보이고, 수쿠크법은 무슬림에 유리한 것이므로 오히려 수쿠크법을 도입한 나라에 대해 무슬림들이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다. 수쿠크법을 도입하면 '샤리아 위원회'가 설치되어 채권 발행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의 상당수가 이슬람 근본주의자이거나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법률보다는 이슬람 율법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법체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법에 근거한 금융이므로 '샤리아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설치된 '샤리아 위원회'가 그들과의 국제거래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민주국가의 법체계를 흔들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견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슬람 금융은 '자카트'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2.5%를 자선단체에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때 '하왈라'(Hawala)라는 송금방식의 특성상 송금 즉시 관련 서류를 파기하므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국제테러조직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음성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슬람 국가,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이 없는 대신에 모든 소득금액의 2.5%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관습화되어 있으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원유수출대금과 같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최대 2.5%의 '자카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가 지하드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카트'는 이슬람 국가와의 거래상 보편적인 문제이므로 이것을 수쿠크법 도입의 반대논리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슬람 국가의 원유수출로 인한 수익 중에서도 '자카트'가 납부되지만 그런 이유로 국내 원유수입을 반대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 국제테러조직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의 문제는 국제간의 공조, 조세정보교류, 자금세탁방지법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수쿠크법 도입 여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세법상 양도소득, 임대소득을 이자소득과 동일·유사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무리하게 확장한 것이라는 비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정당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나 내국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하고, 특히, 수쿠크에 대해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중립성 내지는 평등의 원칙/형평성에 반한다는 비판(조세특례제한법은 기존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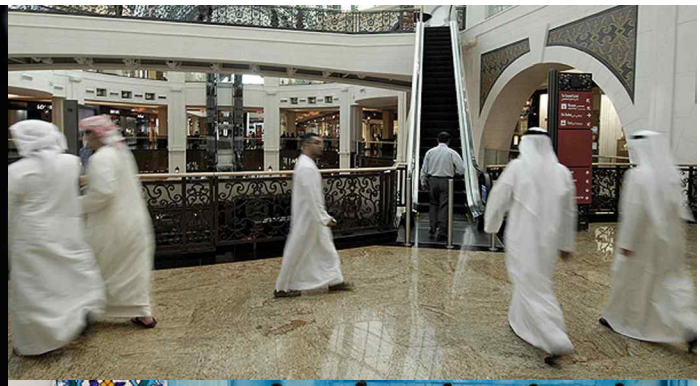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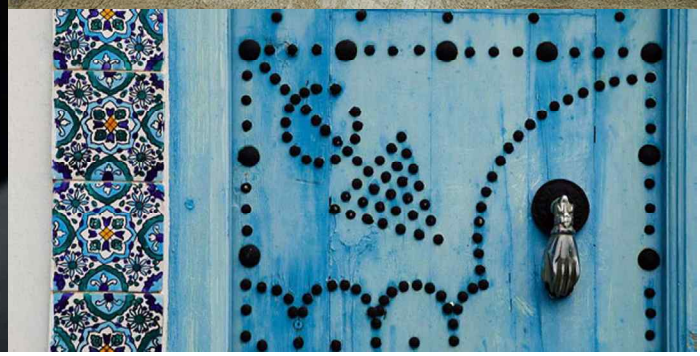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특혜를 인정하고 있고, 이것은 조세정책상 가능하다)은 가능하다. 또한 수쿠크법이 시행되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상하거나 절하하는 방법으로 국내 · 외 기업의 부당계열사 지원과 같은 부당한 내부거래, 편법적인 상속/증여, 해외비자금 마련, 검은 돈의 유입이나 유출, 그에 따른 각종 탈세가 용이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이러한 문제는 수쿠크법 고유의 문제는 아니고, 보완책 마련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특정 종교의 실물거래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이러한 견해는 이슬람 금융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다).

최근에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양도 소득세)을 면제하는 수쿠크법은 토지 불로소득을 더 용인하는 것이며, 수쿠크법을 성경에 비춰 보면 가난한 자에게 꾸어 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말고 안식년에는 부채를 탕감해 주라는 성경의 대부법(자본법)을 회피하기 위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이라는 성경의 토지법을 어기는 셈이다. 이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작 율법의 더 중요한 바인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리고,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더 큰 낙타는 삼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아직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수쿠크 제도를 운용할 만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수쿠크법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논평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론 및 대응전략

필자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기상조론'이다. 수쿠크법 자체가 법률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그 법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 특히, 부동산 관련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내에 이슬람 금융 관련 전문가 부족, 기독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준비 미비 등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 정부의 수쿠크법안은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반대론자의 합리적인 견해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다. 경제적인 이유를 앞세워 사회갈등 요소를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도 수쿠크법 도입을 서둘기 보다는 현 상태에서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따를 것인지, 이슬람 금융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에 맡겨두고 그 추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면서 수쿠크법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외교라인에서마저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에서 과연 국내에 이슬람 금융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쿠크법이 만들

이슬람 선교의 핵심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 변화하는 것이지, 공격적으로 개종시키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이슬람 포비아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에도 분명히 악한 세력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들로 인하여 이슬람 전체를 일반화시켜 과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어지면 비판론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샤리아 위원회'의 입김에 따라 계속 끌려 다니게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외화자금의 유동성은 풍부한 편이므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처럼 시급하게 수쿠크법을 도입할 이유도 없다.

한편,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자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진품이요 명품이라 믿고 있다. 따라서 무슬림들도 그들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세계화에 반대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슬람 국가로 파송되어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제 발로 국내를 찾아온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고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성스럽고 가치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은 현재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부여된 동등한 가치이며 무슬림도 포함된다. 중동 현지에서 십 여 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슬림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성경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고, 이미 낫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ㄱ'자를 가르치기가 쉽듯이, 그들에게도 복음의 진리는 통한다고 한다. 이주노동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NGO 사역자들은 오늘도 많은 국내 거주 무슬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분들의 섬김과 나눔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감동받은 무슬림이 변화되어 본국에 역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슬람 선교의 핵심도 역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 변화하는 것이지, 공격적으로 개종시키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이슬람 포비아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에도 분명히 악한 세력(이슬람 근본주의자 등)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들로 인하여 이슬람 전체를 일반화시켜 과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자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기존의 우리 문화와 충돌할거나, 부정적인 이슬람 세력들이 국내에 침투해 들어오거나, 우리 국민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될지 모른다는 온갖 우려와 걱정으로 인해 두려움을 양산시키고 있지만, 과연 그보다 먼저 기독교의 진리로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즘도 필자는 이슬람 지역에서 살해당하는 기독교인의 소식을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한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똑같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이 피 흘리며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능력으로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무슬림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수쿠크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족(蛇足)을 달자면, 정치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이나 수쿠크법에 대해서도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안의 전후좌우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더불어 비종교인의 시각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집단으로 비치고 있는 종교집단(특히 목회자)이 다른 종교의 세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부터 전문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목회자들보다 다양한 분야의 그리스도인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합리적으로 각각의 사안에 대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